

결의안 번호. 20-33

코로나19에 관한 글렌데일 비상사태 권한으로 공공명령을 확인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 시의회 결의안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2.84조는 지방 시의회가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규정한다.

2020년 3월 16일, 글렌데일 지방자치법의 2.84조에 의거하여 글렌데일 시의회는 신종(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하는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 질병(코로나19)에 대해 늘어나는 우려로 인해 불가피한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결의안 20-28호를 채택하였다. 바이러스 증상은 열, 기침, 호흡곤란이고, 감염자는 가벼운 병에서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하는 여러가지 결말이 있게 된다.

짧은 기간에 확진자 수가 극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질병통제예방국은 코로나19가 사람 간에 쉽게 퍼진다고 알렸으며 대중은 가능할 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한 방침과 일과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발급하였다. 또한, 2020년 3월16일, 시의회는 특정 공공장소의 출입을 막고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2020년 2월 26일, 질병통제예방국(CDC)는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사람간 확산인 첫번째 사례를 확인하였고, 이 사례는 지역사회에서 일반대중의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을 높인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코로나19의 서막으로 공중보건에 즉각적이며 근사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동시에 지역 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를 전염병으로 분류하였고, 2020년 3월12일부터, 전세계의 코로나19 확인자는 169,000명을 넘고 6,500명 이상이 바이러스로 사망하였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약 확진자 69명과 사망자 1명을 보고하였다. 짧은 시간에 확진자 수는 극적으로 늘어났다. 질병통제예방국은 코로나19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확산되므로 일반인들은 어디든지 가능한 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방침과 일과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글렌데일 시는 손 위생과 호흡 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노력을 배로 강화하였다. 시정부인 우리가 커뮤니티 확산속도를 늦추고 의료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2.84조에 의거하여 비상서비스국장의 비상시 공권력으로, 비상사태로 피해입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발표하며, 글렌데일 시 전역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이고 근접한 거리에 머물러 있는 특정 시설에 대한 일련의 일시적 규제를 명령하였다.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2.84.090항과 결의안 20-28호로 허가된 바, 비상사태서비스국장은 비상사태 대중명령을 발표하였다.

시의회는 술집, 연회장, 나이트클럽, 식당, 영화관, 라이브 공연장, 볼링장, 아케이드, 비슷한 유흥장,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의 폐쇄와 관련된 대중명령을 선포하는 결의안 20-29호를 채택하였다.

글렌데일 시의회가 결의한 바이다:

1항. 비상사태 서비스국장의 다음 공공명령을 이에 재가하고(수정된 바에 따름) 2020년 4월30일까지 연장한다.

A. 글렌데일 공공명령 2020-01호. (성인 주간보호소) 글렌데일의 모든 성인 주간보호소는 문을 닫는다. 이 폐쇄령의 목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코로나19의 확산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한 장소에서 대규모 성인 집회나 모임을 막기 위한 것이다.

B. 글렌데일 명령번호 2020-02. (디지털 서명)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동시에 글렌데일 시와 대중이 사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주법령과 규정에 의거하여 글렌데일 시가 서류에 디지털 서명과 전자 서명을 하기 위해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1995 타이틀1에 1.13항을 추가하고, 2020년 3월 10일에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하고 2020년 4월9일에 유효한 조례안 5948호는, 유효일이 대기 중인 조례안 5948호로 즉시 이행한다.

C. 글렌데일 공공명령 2020-03호. (주거용 임대와 상업용 임대).
세입자가 세계적 유행병인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으로 월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증명하면, 글렌데일 시에서 지역적 비상시기에 연방정부 주택선택바우처프로그램(섹션8)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는 정부기관의 월세를 지원받는 세입자와 주거용이나 상업용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주는 퇴거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직장 폐쇄, 혹은 근무시간이나 업무의 감소, 학교 휴교로 인한 육아 비용, 코로나19로 걸린 병과 관련된 헬스케어 비용, 혹은 코로나19로 병든 세입자의 가족원의 간병, 혹은 정부가 명령한 비상사태 조치로 발생한 소득 손실이 포함된다. 4월까지 납부할 렌트는 제외하고, 상기 규정된 이유 중 한가지 이상으로 인해 렌트를 납부하지 못하는 통지서를 납부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집주인에게 제공해야 하고, 통지서는 실행이 가능하자마자 만들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합법적으로 부과된 렌트를 세입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세입자는 밀린 렌트를 납부하는 지역 비상사태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6개월까지 시간이 있게 된다. 세입자는 불법퇴거소송의 긍정적 방어으로써 이 조항에 나온 보호법을 사용해도 된다. 또한, 이 전례없는 비상사태에서 글렌데일 주민에게 구제책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렌트 인상 동결을 이에 발급하고 즉시 유효하다. 이 결의안 날짜로부터 시작하여 지방 비상사태의 지속기간 동안 주거용 세입자의 렌트는 동일한 유효로 유지된다.

D. 글렌데일 대중명령 2020-04호. (공원과 등산로 봉쇄) 코로나19 발병의 대책으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소유한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시설에서 시의 등산로와 스포츠/운동 경기장, 운동장, 운동시설은 문을 닫는다.

2항. 글렌데일 시 권한으로 코로나19에 관련된 대중명령을 발표한 글렌데일 시의회의 결의안 20-29은 2020년 3월 16일에 채택되고 2020년 3월 31일에 끝나며 2020년 4월 30일까지 법적효력을 연장하고 시의회나 비상사태 서비스 국장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3항. 상기 공공명령의 위반사는 \$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수감형을 규정하는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1.20항에 의거하여 시 검찰청에 고소하기 위해 회부될 수 있다. 집행관은 이 명령을 집행하면서 본인의 재량을 사용하고 항상 명령의 의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위반은 본문에서 규정된 다른 집행법과 함께 첫번째 소환장은 \$400의 벌금, 두번째 소환장은 \$1,000의 벌금, 세번째 소환장은 \$2,000의 벌금을 규정하는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1.24항의 규정으로 집행된다.

4항. 이 결의안과 해당 명령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나 캘리포니아 주가 규정한다 더 엄중한 제한사항을 대신하지 않는다.

5항. 이 명령은 2020년 4월 30일 이전까지 연장될 수 있다.

2020년 3월 24일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함.

Ara J. Najarian

시장

증명:

Aram Adjemian

시 서기

양식 승인:

Michael J. Garcia

시 검사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SS.
글렌데일 시)

글렌데일 시 서기인 본인 아다시스 카사키안은 전술한 결의안 20-33호는 2020년 3월 24일에 개최한 정기 회의에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다음과 같은 투표로 채택되었음을 이에 인증합니다.

찬성: 아가자니안, 디바인, 갈페산, 키테로, 나자리안
반대:
궐석:
기권:

Aram Adjemian

시 서기